##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77 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문정복 · 부승찬

윤준병 · 임미애 · 위성곤

윤후덕 · 차지호 · 강선우

서영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. 그런데 방연(防煙)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으나, 방연마스크는 현행법상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피해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등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차량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,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 호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의 제목 중 "특정소방대상물에"를 "특정소방대상물 등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, "특정소방대상물의"를 "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"특정소방대상물의"를 "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, "특정소방대상물의"를 "특정소방대상물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, "특정소방대상물의"를 "특정소방대상물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에"를 "제6항에"로 한다.

-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중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방연(防煙)마스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- 1. 특정소방대상물
- 2.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차량

- 가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
- 나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
- 다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전단에"를 "전단 또는 제2항에"로, "포함한다)의"를 "포함한다)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

에"로, "포함한다)의"를 "포함한다)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 물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전단에도"를 "전단 또는 제2항에도"로 한다.

제54조제1항제1호 중 "제12조제2항에"를 "제12조제3항에"로 한다. 제55조제1항제1호 중 "제12조제1항을"을 "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"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12조제3항을"을 "제12조제4항을"로 한 다.

제56조제1항 중 "제12조제3항"을 "제12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57조제1호 중 "제12조제2항"을 "제12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61조제1항제1호 중 "제12조제1항을"을 "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" 로 한다.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 <u>특정소방대상물에</u> 설치하	제12조( <u>특정소방대상물 등에</u> 설
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 (생	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
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
	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의 관
	계인은 소방시설 중 유독가스
	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방연
	(防煙)마스크를 화재안전기준에
	따라 설치 • 관리하여야 한다.
	1. 특정소방대상물
	2.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
	용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
	목의 차량
	가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
	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
	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
	<u>량</u>
	나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
	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
	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
	한 철도차량
	다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
	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

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· 관리되 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•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 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(잠금을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 ·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 만, 소방시설의 점검 ·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・차 단은 할 수 있다.

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·정비를 위하여 폐쇄·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				
령으로 정하는 자동차				
<u>③</u>				
<u>제1항 및 제2항에</u>				
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제2항에				
따른 소방대상물의				
④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제2항				
에 따른 소방대상물의				
제1항 및 제2항에				
⑤				
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제2항				
에 따른 소방대상물의				

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

- ⑤ (생략)
- ⑥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<u>제5항에</u> 따른 작동 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⑦ (생략)

제13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 례)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 (건축물의 신축·개축·재축· 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 대상물을 포함한다)의 소방시 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 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 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 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- 1. · 2. (생략)
- ② · ③ (생 략)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

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<u>⑦</u>
제6항에
<u>- 10 8 11</u>
,
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
제13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
례) ①
,,
<u>전단 또는 제</u>
<u> 2항에</u>
<u>포함한다) 또는 제12조</u>
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
1 0 /회케키 키 0 \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<b>4</b>

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⑤ (생략)

제54조(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)

-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 명 또는 이행명령(이하 "조치명령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-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
- 2. ~ 6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55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) ① 누구든지

<u>전단 또는 제2항에도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⑤ (현행과 같음)
제54조(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)
①
1. <u>제12조제3항에</u>
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55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
포상금의 지급) ①

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.

-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 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
- 2. <u>제12조제3항을</u> 위반하여 폐 쇄·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3. (생 략)
- ② ~ ④ (생 략)
- 제56조(벌칙) ① <u>제12조제3항</u> 본 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 쇄·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② (생 략)

- 제5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 - 제12조제2항, 제15조제3항, 제16조제2항, 제20조제2항, 제20조제2항, 제23조제6항,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

1.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-
2. 제12조제4항을
2. <u>////12-12////4-8-je</u>
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6조(벌칙) ① 제12조제4항
② (현행과 같음)
제57조(벌칙)
,
1. 제12조제3항

2. ~ 9. (생 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제6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61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
1.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	<ol> <li>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-</li> </ol>
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	
라 설치 • 관리하지 아니한 자	
2. ~ 15. (생 략)	2. ~ 1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